한국감정원장 언론보도내용 관련 조사결과 보고

한국감정원장(서종대)의 **성희롱** 성 **발언** 관련 **언론 보도내용**에 대한 사실관계 **확인결과 조치방안**을 **검토 보고** 드립니다.

□ (**배경**) 한국감정원(이하 "감정원") **서종대 원장**의 **성희롱 관련 발언**이 **언론**에 **보도**되어 **사실관계**에 대한 **확인조사**

▸ (보도) '17.2.7(화) 동아일보 등

□ (**조사결과**) 언론 **보도내용**에 대한 **사실관계 조사**

① '16.11.3(목) 세계평가기구연합(WAVO) 총회 후 식당에서 여직원에게 "**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**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" 발언
☞ 당사자 및 참석 여직원(2명) 불쾌 (성희롱 성립)

② '16.7월 **감정원 서울사무소**에서 간식타임 중 아프리카 **성노예** 발언 및 **한국 여자들 행복한** 줄 알아야 한다고 발언
☞ 여직원 3명 중 1명 만 불쾌하게 생각 (성희롱 不성립)

③ '16.11월 **케냐 나이로비 출장** 중 발언 ⇨ **사실과 다름** (不성립)

□ **조치방안**

1 감정원장(서종대) **조치대안**

○ (**제①안**) 공공기관운영위(기재부)에 **해임 건의** (공운법 제35조①항③항)
○ (**제②안**) 감정원 **이사회**에 **해임** 의결 등 **요구** (공운법 제22조①항)
○ (**제③안**) 고용노동부의 감정원 **이사회에 징계 등 요구** (남녀고용평등법제14조)

2 검토의견

○ (제①안) **상법상 충실의무 위반**(남녀고용평등법 위반) 등을 **사유**로 **주무기관의 장**의 **해임건의 가능** (검토의견 별첨)

○ (제②안) **감정원에 통보**하여 **이사회 결의 요구**가 가능하나, **부결**될 경우에는 **추가 대안검토** 필요

○ (제③안) 고용노동부에서 **조사 종료시 조치 가능** (시기 미정)

※ (**조치의견**) **제①안**으로 추진

별첨 **주무기관의 장의 해임 건의 사유 검토**

□ 관련 법규

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】

▸ (제35조제3항)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기관장을 해임 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다

【 상법 】

▸ (제382조의3)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

□ 검토내용

▸ 해임건의 사유 요건 검토

○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제3항과 같은 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2조의3이 규정하는 **법령준수 의무**에는,

① **문언해석상 회사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법령도 준수할 의무**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

- **성희롱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**

【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】

▸ (제12조)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

▸ (제14조제1항) 법인인 경우 대표(감정원장)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보며, 성희롱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법인(이사회)에게 징계 등 요구

▸ (제39조)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태료(1천만 원)를 부과

②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에 따라 **국토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간** 체결한 원장 **경영성과 협약서**,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과

-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하면 원장이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을 **직무상 의무**도 **인정된다**고 볼 수 있음 (직무상 의무 위반)

> ▸ (경영성과 협약서 제4조제6항)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토록 규정
>
> ▸ (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5조)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
>
> ▸ (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) 임직원은 그 직위,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

③ 최근 **대전고등법원**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(식약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)이 근무시간에 **회의실에서 예배**를 **본 사안**에서 **상법상 충실의무 위반**에 **해당한다**고 판결*한 사례가 있음

*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1.18 선고 2016누10047

④ 공공기관의 공공성,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주무기관의 장에 의한 **효율적**이고 적정한 **지도·감독**을 위해서는 **법령 위반**에 대하여 **유연하고 포괄적**으로 **해석**하는 것이 필요

□ 결 론

○ **한국감정원장**의 **성희롱 행위**는,

▸ 공운법 상 **주무기관**의 **장**의 **해임 건의 요건 충족**

> ☞ 성희롱 성립 요건 (대법원 2005두6461 판결)
>
>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, 법원은 성립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
>
>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

> ☞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별표1(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)
>
> 나. 언어적 행위
>
> (1)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
>
> (2)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>
> (3)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
>
> (4)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>
> (5)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